



# *Web Contents*



2021년 02월 25일 16시 12분

# 목차

목차	2
긴급복지지원제도	3
긴급지원 제도?	3
긴급지원 대상	3
적정성 여부 판단 기준	3
지원종류와 금액 및 횟수	3
사업지원절차	4
긴급지원제도 문의 및 신청방법	4

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

**긴급복지지원제도**

위기가구사례관리


**긴급지원 제도?**

갑작스러운 위기사항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·의료·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.

## 긴급지원 대상

- 갑작스러운 위기사항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
- 위기사유
  - 주소득자가 사망, 가출, 행방불명,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
  -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
  -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등을 당한 경우
  - 가정 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
  -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
  -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
  -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
  - 주소득자와 이혼, 단전된 때,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(가구원 1명 한정)의 실직 및 휴·폐업, 화재 등 실질적 영업곤란으로 생계유지 곤란한 경우(\* 주소득자의 소득이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긴급지원 생계지원 금액 이상인 경우), 출소(구금 1개월 이상, 6개월 이내 출소)한 자가 가족이 없고 생계 곤란한 경우 등

## 적정성 여부 판단 기준

- 소득기준 : 기준 중위소득 75%(1인기준 1,280천원, 4인기준 3,460천원)이하 - 의료지원, 주거지원,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, 교육지원, 연료비지원, 해산·장제비지원, 전기요금지원 부분
- 재산기준 : 11,800만원 이하
- 금융재산기준 : 500만원 이하(단, 주거지원 700만원 이하)

가구규모	1인가구	2인가구	3인가구	4인가구	5인가구	6인가구
원/월	1,280,256	2,179,896	2,820,024	3,460,152	4,100,280	4,740,408

## 지원종류와 금액 및 횟수

종류	지원내용	지원금액	횟수
위기 상황 주급여 A	생계	식료품비,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	1,194천원(4인기준)
	의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각종검사, 치료등 의료서비스 지원</li> <li>▪ 300만원 이내(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)</li> </ul>	입원 시 300만원 이내 (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지원)
	주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국가·지자체 소요 임시 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</li> </ul>	422천원 (중소도시, 4인기준)

(<http://www.mokpo.go.kr>)

금전현물지원	종류	제증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		횟수	
		지원내용	지원금액		
	부가급여 B	복지시설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</li> <li>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</li> </ul>	1,450천원 (4인기준/1개월)	3회 (최대6회)
		교육지원	초·중고등학생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사람 학비 지원	초(221천원),중(352천원),고(432천원, 수업료, 입학금)	1회(최대2회)
	그밖의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</li> <li>동절기 (10월~3월) 연료비 : 9.8만원</li> <li>해산비(60만원),장제비(75만원),전기요금(50만원이내) : 각1회</li> </ul>			
민간기관·단체 연계지원 등		사회복지공동모금회,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상담 등 기타지원		횟수제한 없음	

## 사업지원절차

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위기상황발생</li> <li>2. 신고접수(사회복지과 긴급지원 담당자,129콜센터)</li> <li>3. 현장확인(담당공무원)</li> <li>4. 지원실시</li> <li>5. 사후조사</li> <li>6. 적정성 심사(긴급지원심의위원회, 지원중단/비용반환)</li> <li>7. 사후연계(민간 프로그램, 기초생활보장 등 기존 제도)</li> </ol>
--

## 긴급지원제도 문의 및 신청방법

- 목포시청 사회복지과 270-8266, 국번없이129
- 신청서류 : 신청서,금융정보제공동의서,진단서,입원확인서,소득확인서,금융기관 거래내역서, 보험약관 등

# ***MokPo - Si*** ***Web Contents***

